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73 발의연월일: 2021. 8. 17.

발 의 자: 강선우 · 이형석 · 조승래

오영환 · 남인순 · 허종식

서영석 · 임종성 · 윤준병

변재일 • 신동근 • 김성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(종합병원)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하지만,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 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, 응급의료기관 중에 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,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3조의2 및 제25

조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「의료법」 제3조에"를 "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, 「의료법」제3조에"로, "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"를 "권역응급의료센터"로 한다.

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하며, 다음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 병원(이하 "종합병원"이라 한다)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"을 "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"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의 위탁"으로 한다.

- 7.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
- 8.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

- 9.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제1항 중 "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"를 "권역응급의료센터"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종합병원"을 "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"종합병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"를 "권역응급의료센터"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 단서 중 "그러하지 아니하다"를 "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 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.

제3조(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

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.

제4조(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"응급의료기관"이란 「의료 5. ------제25 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센터, 「의료법」제3조에-----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 의료센턴, 전문응급의료센터, -----권역응급의료센터-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 급의료기관을 말한다. 6. ~ 8. (생략) 6. ~ 8. (현행과 같음) 제13조의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제13조의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 ① (생 략) 연차별 시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② -----「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 하여 수립하여야 하며, 다음---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5조(중앙응급의료센터) ① 보 제25조(중앙응급의료센터) ① ---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

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「의료법」</u>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"종합병원"이라 한다)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7.</u> (생 략) <u><신 설></u>

 ②
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

 기준·방법 및 절차
 등에 관하

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 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
- 8.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
- 9.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
- 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의 위탁-----

령으로 정한다. 제29조(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제29조(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.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 -권역응급의료센터-----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 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0조(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제30조(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 정할 수 있다. "종합병원"이라 한다)-----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제30조의2(권역외상센터의 지정) 제30조의2(권역외상센터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 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

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 ----권역응급의료센터-----

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 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- 제35조의2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)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 - ② (생 략)

| -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|
| - | |
|]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(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: | 35조의2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 |
| : | 료기관) ① |
| - | |
| - | |
| - | |
| _ | |
| _ | |
| _ | |
| | 기그리 제라하 스 |
| - | <u>신고를 생략할 수</u> |
| | <u>있다</u> . |
| (| ② (현행과 같음) |